VISION

전 주 비 전 대 학 교

수신자 사회복지시설기관장(업무담당자)
(경유)
제목 2016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협조 의뢰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제등록생의 현장실습을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내실있는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협조내용

가. 실습기간 : 2016. 3.21(월) ~ 6.15(수)이내 (1일 최소 4시간, 15일 이상 총120시간 이상 실시)

나. 실습개시 전 대학 제출서류

1)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원본 1부

2) 시설 인·허가증(또는 설치신고증) 사본 1부

3)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

4) 실습지도자 실무 경력증명서 원본 1부

- 위 서류 중 2),3),4)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급의 실습기관등록증으로 대체 가능

4.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관련[별표1])

가. 실습기관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·시설, 기관 및 단체

나. 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또는
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자

- 위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
- 실습지도자가 대표자(기관장,센터장)일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
(상근확인서 또는 주말출근확인서 등)
-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: 슈퍼바이저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(1회기 기준)

5. 실습진행과 관련하여 실습계획서에 준한 실습지도를 부탁드리며, 기관, 지역사회,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및 실습생 근태, 실습일지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

※ 본 대학 실습생의 오프라인 출석수업일은 실습시간 불인정되므로 일정계획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실습신청서 1부
2. 실습생 프로파일 1부
3.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1부
4.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1부. 끝.

전 주 비 전 대 학 교 총 장

직원	배해선	팀장	신종수	처장	전결 02/01 박효식

협조자

시행 학사지원팀-171 (2016.02.02.) 접수 ( )

우 560-7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/ www.jvision.ac.kr
전화 (063)220-3925 /전송 (063)220-3719 / hsbae@jvision.ac.kr / 공개